

## ■ 최신 법령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8호, 201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4. 12. 3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14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 다운로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